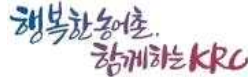
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 <b>한국농어촌공사</b> <b>보 도 자 료</b>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보도일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. 3. 17 (금) 10:00 | 배포일시 | 2023. 3. 17 (금) 10:00 |
|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지은행처<br>농지사업부        | 책임자  | 부장 방규현(061-338-5881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| 대리 이진오(061-338-5887)  |

## 농어촌공사, 「선임대-후매도사업」 신청자 모집

-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신청자 접수 -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「선임대-후매도사업」의 신청자를 모집한다.

본 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(최장 30년) 하고, 원리금 상환 완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이다.

지원 대상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청년후계농 및 2030세대로, 신청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.

대상 지역은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 소재의 농지이며, 대상 농지는 1,000㎡ 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과 밭, 농업진흥지역 밖인 경우는 경지정리된 논과 기반 정비가 완료된 밭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 단, 농지은행의 지역별 매입 상한 단가를 초과하는 농지는 포함되지 않는다.

신청 자격 및 지원 농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 포털(www.fbo.or.kr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농지 소재지의 관할 지사에서 접수 가능하다.

이병호 사장은 “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의 육성은 지속적인 농업안정화에 필수적”이라며 “이번 사업이 청년농의 유입 확대와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

## 붙임

## 선임대-후매도사업 공고문

### 1. 사업내용

-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

### 2. 신청자격 및 지원농지

- 신청자격 : 농지 취득이력\*이 없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서 맞춤형 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(단, 주소지가 매입예정 농지와 동일 및 연접 시·군·구 또는 직선거리 30km이내 해당하여야 함)

\* 계약 체결시까지 농지 취득이력이 없어야 함

- 대상지역 :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 소재의 농지(단, 인구소멸지역\*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부여, 특·광역시 제외)

\*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(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) 1호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

- 대상농지: 1,000㎡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·밭(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,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함)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\*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\*에 해당하여야 함.

\* 추가적인 조건은 농지은행 포털 참조

### 3.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

- 사업규모 : 8,160백만원(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)

- 지원한도 : 1.0ha 이내(영농경력\* 2년 이하는 0.5ha 이내)

\*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

\*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,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 지원 가능

○ 지원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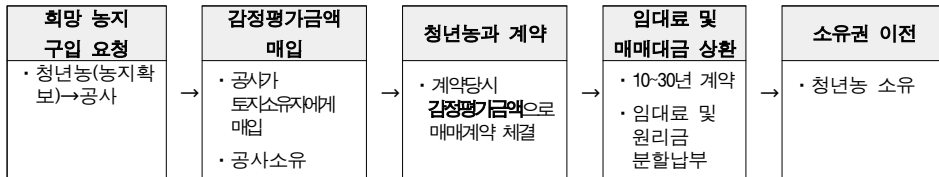
① 임대

- (임대기간)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
- (임대료) 표준임차료의 50~100% 범위 내 공사와 합의 결정
- (의무사항)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

② 매매

- (매도가격)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(감정평가금액)으로 매도  
(단,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)
- (납부기간) 임대기간과 같음
- (납부방법)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,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
- (상환금리) 연리 1.0%

4. 지원절차



5.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3.03.20 ~ 03.29(18시까지)(10일간)
- 서류제출 : 농지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서 및 서류 등을 방문 및 우편 제출 \* 우편제출은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
- 대상자통보 : 2023.04.21.일 이후 대상자 통보

6. 사업대상자 선정방법

- 우선순위 : (1순위) 청년후계농 → (2순위) 2030세대
-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겹칠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

7. 사업대상자 선정방법

○ 선임대 후매도 사업 농지 매도자(농지소유자)

- 필수서류: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, 지적도, 토지이용계획확인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농지대장

○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자(청년창업농 및 2030세대)

- 필수서류: 주민등록초본(등본), 신분증(사본), 가족관계증명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(청년후계농은 계약 후 제출 가능), 농지대장, 행정청 보관 폐쇄 농지원부(사본),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(재산세), 지방세 완납 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(배우자 포함)
- 선택사항: 졸업증명서(농업계 학교 졸업시),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이수 실적,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상장 사본, 보유자격증 사본, 브랜드·품질인증·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

8. 유의사항

- 지원농지(매입희망농지)는 사업희망자가 직접 확보하여 신청하여야 함
- 타작물 재배 및 휴경에 따른 임차료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
-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(단,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은 농지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자가 부담)
- \* 최초 계약을 통해 농지소유권 농지매도자에서 공사로 이전: 등기비용 공사 부담
- \* 원리금 상환 후 농지소유권 공사에서 청년농에 이전: 등기비용 청년농 부담

- 선정 후 신청자·농지 등에 부적격 사유 발생 시, 선정취소 및 관련 비용(감정평가 등) 반환 불가
- 선임대 후매도 사업으로 임차한 농지는 계약기간 동안 타작물 재배가 의무됨
- 농지매도 희망자(농지소유자), 사업 신청자(선임대후매도 희망자) 모두 사업 조건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, 매도 희망자와 사업 신청자 서류모두가 접수되어야 함